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4년 12월 15일
제 안 자 : 이 기 동 의 원 의

□ 제안이유

-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제1장 총칙”에 두고 “자유 게시판” 등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 일부 오류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주요골자

- 안 제2조제7호중 “담당관·과를”을 “담당관·과장은”으로 함
- 안 제3조제2항제4호 “전자우편 아이디”를 “이용자 아이디”로 함
- 안 제5조(적용범위)에 “도교육청”을 포함하여 제3조로 하고 제1장 총칙에 둠
- “자유게시판” 또는 “열린마당” 설치 운영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제15조로 하고 제4장에 둠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7호중 “담당관·과를”을 “담당관·과장은”으로 한다.
- 안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용자 아이디(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용
-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3조로 하고 제1장 총칙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 홈페이지 이용자로 한다.
- 안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 안 제15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제16조 내지 제19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4장에 둔다.

제15조(자유게시판 등 운영) 교육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자유게시판 또는 열린마당 등을 운영 한다.